

투자권유준칙

제 1 편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등(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 투자자구분 등

제 4 조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또는 유선등으로 투자상담 요청시 투자자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주권

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장 투자자정보

제 7 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 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 8 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 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제 1항과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1호]에 따른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권유

제 9 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3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단,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 3 장 설명의무

제 12 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별지 제2호]를 통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 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특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특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등은 제 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5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3 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①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5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

라서는 아니 된다.

1. 제 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16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
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17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 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준칙은 2012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7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 정보 확인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8조 제5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2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 이후에도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관한 변동을 확인하여 이의 내용에 맞게 투자일임(자문) 자산을 운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신 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불원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 ▶ 날짜 및 시간 _____
- ▶ 고객 연락처 _____
- ▶ 고객명 _____

PART 1	
구 분	투 자 자 정 보
1.연 령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 ~ 35세 <input type="checkbox"/> 36세 ~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 ~64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2.연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 초과
3.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10% ~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 30%이하 <input type="checkbox"/> 30% ~ 4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초과
4.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하 <input type="checkbox"/> 6개월 ~1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1년 ~2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2년 ~3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3년 초과
5.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6.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보장형 ELS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7.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8.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i>*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i>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 손실 위험도 감내 가능
9.투자수익· 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더 중요
10.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1.금융지식수준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투자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PART 2	
구분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 기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 이상의 높은 투자수익 추구,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적극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히 알려 드렸습니다.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투자자정보 변경내용을 통보 또는 회신하지 않는 한, 투자일임계약기간 (최대36개월) 동안에는 위 투자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 투자일임계약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 운용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대리인 성 명 (인/서명)

[별지 제2호]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p>투자위험등급 2 등급</p> <p>[고 위험]</p>	<p>(주)이룸투자자문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초고위험)에서 5 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	---

- ◆ 해당상품명 : 투자일임계약
- ◆ 자산유형종류 :
- ◆ 계약회사 및 담당직원 : 이룸투자자문 성명 서명/인

[핵심 사항]

- ◇ 투자 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서면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투자일임계약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투자일임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시장위험: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 ◆ 거시환경위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
 - ◆ 개별기업위험: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른 변화노출
 - ◆ 유동성위험: 환금성 제약 위험
 - ◆ 기타위험: ()
- ◇ 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자산 매도시 매매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일임계약은 사전서면자료에 기재된 당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보수 일부 환급 및 성과보수 수취,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해당상품명 : 투자일임계약

◆ 자산유형종류 :

◆ 상대적 위험도 : 총 _____ 단계 중 _____ 번째로 높음

◆ 계약회사 및 담당직원 : 이룸투자자문 _____ 성명 _____ 서명/인

고객 확인사항 [자필기재]

1.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로 교부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2. 투자일임계약의 성격 및 내용, 투자에 수반되는 (원금 손실의 위험), 투자일임계약 성격상
(손실보전 요구를 할 수 없다) 는 사실, 본인이 부담하는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에 관
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본인의 투자자성향 및 투자자성향 변경 시 통지방법, 투자일임 운용
인력의 성명 및 경력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이를 (이해 하였음) 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 : _____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인)

[별표 1]

적합성 판단 방식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함

▶ 문항별 배점 (* 중복응답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계산)

	1	2	3	4	5
1번	10	9	8	7	6
2번	6	7	8	9	10
3번	10	9	8	7	6
4번	6	7	8	9	10
5번	5	4	3		
6번	8	8	9	9	10
7번	7	8	9	9	10
8번	3	6	9	10	10
9번	3	4	5		
10번	0	4	8	10	
11번	0	4	8	10	

▶ 점수 결과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류

50점 미만	안정형
50점 이상	안정추구형
60점 이상	위험중립형
70점 이상	적극투자형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투자 상품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투자자 투자성향	안정형	투자권유불가능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투자권유가능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투자자의 투자성향 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적합성 판단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중소가치형	가입가능		가입 불가		
성장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별지 제3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제 1 편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고령투자자"란 7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 ②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 ③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제 2 편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 3 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위험등급 이상 상품 중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또한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제 3 편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 4 조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 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조 (불완전판매 점검)

- ①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2. 최근 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이 있는 계좌

제 6 조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①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 7 조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 ①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